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32 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김성환·허 영·김문수

이소영 • 주철현 • 김원이

위성곤ㆍ김 윤ㆍ염태영

박지원 • 민형배 • 이재관

허성무 • 박정현 • 김정호

김영배 · 권향엽 · 이수진

박지혜 • 정동영 • 이광희

한정애 · 송재봉 · 이용선

이후기 • 이학영 • 김동아

정진욱 • 이언주 의원

(29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기열에너지는 공기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,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.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열원임.

이에 EU,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음. EU는 2030년까지 총 6천만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하여 보일러 난방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며, 미국도 히트펌프 설치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. 반면 국내에서는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·지열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, 공기열은 제외하고 있어 각종 보급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.

건물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난방 열공급을 보일러에서 히트 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,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 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 책이 필요함.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). 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공기열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"재생에너지"란 햇빛・물・	2		
지열(地熱)・강수(降水)・생물			
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			
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			
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		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것을 말한다.			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아. 공기열에너지로서 대통령		
	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		
	위에 해당하는 에너지		
<u>아.</u> (생 략)	<u>자.</u> (현행 아목과 같음)	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		